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012000 교도소의 조사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교도소장

2. ○○○

주 문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합니다.
2. ○○교도소장에게,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마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3. 30.부터 같은 해 4. 7.까지 조사수용된 기간 동안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1사동 1층 모든 조사·징별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조사 및 징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영상장비 계호

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자비로 구매한 침구류 사용과 TV 시청을 금지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옷걸이 3개만 지급하는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지 않고, 면도 횟수도 제한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의 1사동 1층 복도에 있는 비닐로 된 창문이 파손되어 수용자들이 추위에 노출되고 있다.

마. ○○교도소 교도관인 피진정인 2는 2020. 12. 21. 진정인의 면전신청 요청에 대하여 “그런 것은 없으니 진정을 하려거든 우편으로 하라”며 면전신청서와 진정서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조사수용 중 전자영상장비 계호 관련)

1사동 1층 수용동 일부를 조사·징벌 거실과 일반 독거실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전체 거실에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용 거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상장비의 전원(on/off)을 조정할 수 있어 교도관 회의를 통한 전자영상계호 결정 시에만 사용한다.

진정인은 2020. 3. 30. 친하게 지내던 동료수용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동료수용자를 규율 위반 혐의가 있다며 신고했으나 서로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당사자를 조사수용하였고, 진정인은 허위사실 신고 혐

의로 조사수용된 것에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자살·자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장비를 활용한 계호를 실시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조사수용 중 자비구매 침구사용 및 TV 시청 금지 관련)

자비로 구매하는 침낭과 담요에는 지퍼 및 테두리 천이 부착되어 있어 이를 자살 및 자해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진정인은 당시 허위사실 신고혐의로 조사수용된 것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었기에 진정인이 벽에 있는 TV를 뜯어 파손하거나 자비로 구매한 침구류를 이용한 자살사고 우려가 있어 진정인에게 관에서 보급하는 담요를 지급하고 TV 시청을 제한한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조사수용 중 생활용품 미지급 및 면도 횟수 제한 관련)

진정인의 조사수용 기간에는 ‘조사·징벌 수용자 관리계획’에 따라 생활용품을 지급하였다. 면도기는 칼날을 분리하거나 테두리를 갈아서 칼을 만들거나 면도기 속 건전지로 불씨를 만드는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고자 주 2회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일괄 지급 후 즉시 회수하고 있으며 지급일 외에도 개별수용자가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4) 진정요지 라항(비닐로 설치된 복도 창문 파손 관련)

기결1사동 1층 복도에는 미닫이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천장 환기 구멍에 겨울에는 비닐을 씌우지만 그 외의 계절에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있다.

5) 진정요지 마항(진정서 양식 지급 거부 관련)

진정인은 2021. 12. 21. 작업장 근무자에게 ‘진정서’를 요구하여, 본인이 작업장 근무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은 따로 없으니 편하게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과 작업장 근무자 간의 의사 전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은 이전에 면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면전신청서 양식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서류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재요청했다면 지급하였을 것이다.

피진정기관은 수용자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인 수용관리팀 상담실에서 진정서 작성을 할 수 있고, 수용동 주복도 등 적정한 장소 4곳에 진정함과 필기구, 진정서, 진정안내문 등을 비치하며, 면전신청서 양식은 각 수용동 및 작업장에 비치하고 요청 시 지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동정관찰사항부, 전자영상계호부, 교도관 회의자료, 영치금대장, 조사·징벌실 비품 지급 기준, 조사 징벌자 처우 기준,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의 ‘조사·징벌수용자 관리계획’에 따른 조사·징벌실 비품

지급기준에는 옷걸이 3개, 청소도구(쓰레기통, 빗자루, 쓰레받기 각 1개), 테두리 없는 담요 2장, 식기류, 세면도구, 종이책상, 식수통, 침구류, 피복, 서적, 자변약품, 구매식품, 동내의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피진정기관의 '조사·징벌수용자 효율적 관리계획'에 따른 조사·징벌자 처우기준에는 수용자의 이발과 면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2020. 3. 30. 동정관찰사항부에는 '○○○이 기결4하에서 수용생활을 할 때에 성기에 후시딘을 넣었다는 진정인의 신고 내용과 그런 적이 없다는 ○○○의 진술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정인을 조사수용하였고, 조사수용에 따른 심리적 동요로 자살·자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로 영상계호, TV 시청 금지 및 공동 행사 참가를 제한(2020. 3. 30.~4. 7.)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2020. 3. 30. 거실수용자영상계호부에는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조사수용된 기간 동안(2020. 3. 30. 16:00~4. 7. 16:30) 자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하여 영상계호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0. 4. 7. 교도관회의록에는, '진정인을 포함한 전자영상 계호 실시 여부 심의 명단 38명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 사유는 조사수용에 따른 심리적 동요로 자살·자해 등의 우려 크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진정인은 2020. 12. 23. 피진정인 2에게 면전을 통한 구두 진정을 하고자 면전신청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하여 우리 위원회에 송부하였다.

사. 진정인이 2021. 1. 5. 피진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2020-793)의 청구내용과 결정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내용

청구 내용	- 2021. 12. 21. 진정인이 면전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없으니 진정을 할 땐 우편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한 직원 성명과 부서명, 직책
결정 내용	- ○○과(인권청원) ○○ ○○○ - 면전신청서가 아닌 진정서를 요구하여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것을 담당근무자에게 통보함.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조사수용 중 전자영상장비 계호 관련)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영상장비 계호행위가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더라도 수형자를 24시간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선택적인 것이 아닌 병행되어야 하며, 상시적으로 시선계호 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관찰하는 것 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9. 29.자 2010헌마413 결정).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 1은 조사·징벌 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 시에만 교도관 회의를 통해 전자영상 계호 여부를 결정하되 전자영상 계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원 스위치(ON/OFF)를 해제하며, 진정인은 허위사실 신고 혐의로 조사수용된 것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자살·자해의 우려가 커 영상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1이 조사·징벌실 내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수용자의 경우 교도관 회의를 통하여 전자영상 계호를 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조사수용 기간 동안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 1의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필요하였는지, 즉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료수용자를 규율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허위사실 신고 혐의

로 조사수용된 수용자가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한 행위를 자살 등(특히 자살과 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크다고 불만한 특별한 표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진정인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 대상자이거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0조(지정대상)에 따른 관심대상수용자도 아니었던 점, 2020. 4. 7. 피진정기관의 교도관회의에서 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계호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같은 날 조사수용이 해제되면서 전자영상계호도 해제된 점, 그 외 피진정인의 항변이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들에서 진정인이 특별하게 자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불만큼의 심적 위기를 내보였는지를 확인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진정인에 대하여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해야 할 만큼의 자살·자해 등의 우려가 컸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었는지를 찾기 어렵다.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최소한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함에도 진정인에게서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는 정황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상당기간 부당하게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조사수용 중 자비 구매 침구류 사용 및 TV 시청 금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조사수용 기간 동안 TV 시청을 금지당하고 자비로 구입한 침구류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허위사실 신고혐의로 조사수용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벽에 있는 TV를 파손하거나 자비로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

여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조사·징벌수용자 효율적 관리계획’의 조사·징벌실 비품 지급 기준에 따라 진정인에게 교도소에서 보급하는 담요와 매트리스를 제공하고, 형집행법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약 9일간 TV 시청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조사수용 중 생활용품 미지급 및 면도 횟수 제한)

인정사실과 같이 조사·징벌실 비품 지급기준에는 옷걸이 3개와 청소도구, 테두리 없는 담요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징벌자 처우기준에는 이발과 면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조사실에 분리수용 된 진정인에게 조사·징벌실 비품 지급기준에 따라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면도 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하면서 별도 요청 시 허용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비닐로 설치된 복도 창문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2020. 3.경 기결1사동 1층 복도에 비닐로 된 창문이 파손되어 수용자들을 추위에 노출시킨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단순 민원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진정서 양식 지급 거부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2020. 12. 21. 면전신청서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2는 작업장 근무자로부터 면전신청서가 아닌 진정서 지급을 요청받아 진정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이 따로 없으니 편하게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도록 안내했을 뿐이며, 근무자 간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다소의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진정인은 면전신청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리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면전신청을 막을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허위 안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 2가 진정서 요청으로 인지하고 해당 교도관에게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통보한 사실만으로 진정인의 진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마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2.

위원장 이 상 철

위원 문 순 회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조(거실수용자 계호)

- ①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인원 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 수 있다.
- ②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만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